

# IC회로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감면세정책을 전 산업체인으로 확대

2020년 8월

제20호

## 개요

국발[2000]18호<sup>1</sup> 및 국발[2011]4호<sup>2</sup>가 발표된 후, 지난 8월 4일 국무원은 《신시대 IC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정책 발표 통지》(국발[2020]8호,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IC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전 산업체인에 걸친 감면세우대정책뿐만 아니라 투자유자, 연구개발, 수출입,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응용, 국제합작 등 방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지원정책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문건은 IC회로기업(설계, 생산, 포장, 테스트, 장비, 재료기업 포함) 및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IC회로선폭이 28나노미터 이하인 기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으로 10년 면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IC회로생산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는 《통지》에 담긴 관련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PwC의 Insights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해당되는 기업분들께서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를 즉시 파악하여 각종 혜택의 적용요건에 대해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一、재세지원정책의 심화, 기업세부담 대폭 감면

#### 1.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국가장려기업/항목	《통지》에 언급된 기업소득세 혜택	비고
IC회로선폭 28나노미터 이하 & 경영기간 15년 이상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10년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 이익발생 연도부터 계산, 프로젝트는 첫 생산경영수입 발생시점부터 계산</li> <li>결손금은 10년 이월공제</li> </ul>
IC회로선폭 65나노미터 이하 & 경영기간 15년 이상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5면5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세[2018]27호문<sup>3</sup>에서 이미 IC회로 선폭 65나노미터 및 130나노미터 이하인 기업/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감면혜택 부여</li> <li>《통지》는 처음으로 IC회로선폭 28나노미터 이하인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감면혜택 부여</li> <li>《통지》는 처음으로 IC회로생산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5년→10년으로 연장</li> </ul>
IC회로선폭 130나노미터 이하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2면3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세[2015]6호문<sup>4</sup>에서도 IC회로포장/테스트 기업, IC회로핵심전용재료 생산기업, IC회로 전용설비생산기업에 대해 유사한 혜택을 발표한 바 있음</li> </ul>
IC회로설계/장비/재료/포장/테스트 기업 및 소프트웨어기업	2면3감반(이익발생연도부터 계산)	
중점IC회로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면세 (이익발생연도부터 계산)</li> <li>이후연도부터 10% 세율 적용</li> </ul>	10% 세율우대정책 지속
《통지》시행 이전연도의 정책 지속	IC회로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통지》시행 이전연도 기업소득세는 국발[2011]4호 문건에서 명확히 한 “2면3감반” 우대정책에 따라 집행	재세[2012]27호문 <sup>5</sup> 의 요건에 부합하게 설립 되었으나 줄곧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은 기존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이익발생 연도부터 “2면3감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함.

## 2. 수입단계 관세 및 증치세 정책

- 일정 기간 동안, IC회로선폭 65nm 이하의 논리회로, 메모리생산기업 및 선폭 0.25 $\mu$ m 이하의 특별공정 IC회로생산기업이 자체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 소모품, 정화실 전용 건축재료, 부속시스템 및 IC회로 생산설비 부품을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IC회로 선폭 0.5 $\mu$ m 이하의 화합물 IC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이 자체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 소모품을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IC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및 요건에 부합하는 IC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이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속품, 비품 등은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에 명시된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IC회로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이 임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개발 테스트 설비 포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환경, 프로토타입 및 부품, 소자 등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임시 입국 화물 해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 일정 기간 동안, IC회로 중대 프로젝트의 새로운 설비 수입의 경우, 수입 단계의 증치세 분납을 허용한다.

## 3. 증치세 및 기타 세수정책

- IC회로기업 및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현행 증치세우대정책은 다음을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IC회로 중대프로젝트기업의 증치세 기말매입세액미공제잔액의 환급, 소프트웨어제품의 증치세 즉징즉퇴 등.
- IC회로분야 산학융합 시범기업의 직업교육투자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액의 30% 만큼 당해연도 납부할 교육비부가 및 지방교육부가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 PwC의 Insights :

이번 전 산업체인에 걸친 세수감면은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향상/대체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할 것이며, 면세상품리스트는 공업및정보화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할 것입니다.

## 二、전방위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발전에 기여

이밖에도, 《통지》는 투융자, 연구개발,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응용 및 국제합작 등 방면에 있어서도 IC회로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IC회로/소프트웨어기업의 과창판(科创板), 창업판 등 경내외 IPO를 대폭 지원하고, 경내 상장심사절차를 신속히 함.
- 기업이 중장기채 등 방식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장려 및 지원
- IC회로기업, 소프트웨어기업의 자원통합을 장려하고, 국무원 유관부문과 지방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및 M&A

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법률법규정책 이외의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두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

- IC회로/소프트웨어업계의 기술 및 산업 업그레이드, 집약화,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서비스아웃소싱의 발전을 장려함.
- 글로벌합작을 심화하고, 해외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IC회로/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함. 국내기업의 경외 연구개발센터 공동 설립을 편리하게 하고, 국제자원을 활용하여 산업발전 수준을 제고함.

### PwC의 Insights :

IC회로/소프트웨어기업은 투융자시장, 기업구조조정/M&A, 채권발행, 지식재산권 배치, 해외진출 등 주요 국면에서 투자형식, 사업운용모델, 구체적인 거래약정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잠재적인 세무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조기에 리스크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 주의사항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전반적인 가이드성 문건에 해당되며, 《통지》에 언급된 각종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및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관련 부문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통지》에 언급된 우대정책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중국 IC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IC회로/소프트웨어기업은 《통지》에서 부여한 세수우대조치에 입각하여 자신의 적용요건에 대해 평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면세정책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운용, 경영계획 및 재무예측을 종합하여, 적용대상 세수우대정책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사전에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및 증치세 세수감면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설비 및 제품의 수출입 단계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혜택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기업은 관련 부문과 밀접히 소통하여 최신 정책에 대해 즉시 파악하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 주석

1. 《소프트웨어산업 및 IC회로산업 발전 장려정책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00]18호)
2.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산업 및 IC회로산업 발전 장려정책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1]4호)
3. 《IC회로생산기업의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의 통지》 (재세[2018]27호)
4. 《IC회로산업발전 추가 장려를 위한 기업소득세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의 통지》 (재세[2015]6호)
5. 《소프트웨어산업 및 IC회로산업의 기업소득세 추가장려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12]27호)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 (회계감사 & Tax) 장병일** (86) (21) 2323-5491 byungil.j.jang@cn.pwc.com
-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One-stop tax information platform of Shui Jie 2.0 version**  
Your exclusive tax think tank



- For Android users, please scan the QR code to access to Tencent App store.
- Shui Jie web portal - <https://taxnews.pwchk.com>.



In the context of this News Flash, China, Mainland China or the PRC refer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exclude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aiwan Regi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i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laws can vary widely based on the specific facts involved. Before taking any action, please ensure that you obtain advice specific to your circumstances from your usual PwC's client service team or your other tax advisers. The materials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ere assembled on 4 August 2020 and were based on the law enforceable and information available at that time.

This China Tax and Business News Flash is issued by the **PwC's National Tax Policy Services** in China and Hong Kong, which comprises of a team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dedicated to monitoring, studying and analysing the existing and evolving policies in taxation and other business regulations in China,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They support the PwC's partners and staff in their provision of 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to businesses and maintain thought-leadership by sharing knowledge with the relevant tax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academies, business communities, professional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Long Ma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mailto:long.ma@cn.pwc.com)

Please visit PwC's websites at <http://www.pwccn.com> (China Home) or <http://www.pwchk.com> (Hong Kong Home) for practical insights and professional solutions to current and emerging business issues.

**[www.pwccn.com](http://www.pwccn.com)**